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6.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6월 22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재정이유

-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계약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과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주민 생활 관련 공사에 대한 주민 참여 감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 위원장(경리관-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서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의 자격(시행령 제106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
 -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한 자 등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회의 기능
 - 〈 심 의 사 항 〉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 대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 구매 및 용역
 -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 회의소집 및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가능
 - 소위원장 :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
 - 소위원회 심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위원 참석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사항》
-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상한 금액 설정 : 10억원 이하인 공사
 - ※ 감독대상 공사(시행령 제60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한금액은 조례로 정함.
- 주민참여 공사대상:보안등 공사,보도블록 설치공사,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공중 화장실공사 등
- 감독자 실비 지급 기준(조례 안 제12조)
 - 수당:20,000원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5급상당 공무원” 의 일비 지급 기준 적용(20,000원)
- 감독자의 자격(시행령 제57조):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 당해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 자격 소지자
 - 당해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 경험자
 - 건설 관련 단체, 학회 추천자
 - 당해 공사 현장의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분야 지식이 있는 자
- 주민 감독 범위(시행령 제61조)
 - 당해 공사 관련 주민들의 건의 사항 전달
 -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 내용대로 시공 여부 감독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2호,2005.8.4공포, 2006.1.1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공포, 2006.1.1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5호, 2006.1.2시행)
- 합의사항 : 필요없음
-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입법예고 (2006.3.27 ~ 4.2) 결과 : 의견없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2조내지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한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영 제66조제2항에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안은 상한금액이 서울시 조례안과 같이 10억원이나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는 30억원이고, 경북 안동시의 경우는 1억원이며, 경남 김해시와 마산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또한 주민생활관련 공사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또는 감리자가 전담하여 왔으나 시공과정에 잦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시공과정에 참여토록 하되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않도록 안 제11조 본문의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는 규정은 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하여 주민 감독을 배제시킬 수도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각호의 감독 대상공사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건설,그린파킹공사 등 교통주차시설공사와 하절기 침수에 대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독일수를 발주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주차시설 공사를 추가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1조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로 수정
- 각호 중 1. “하수도 설치 공사” 를 “하수공사” 로
 -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를
 -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로 수정
 - “8. 교통주차시설 공사” 를 신설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